【 문제-1 】 (30점)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각기 다른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이다. 채무자 丙은 丁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그의 유일한 재산이다. 이에 채권자 甲과 乙은 공동으로 丙을 대위하여 丁을 상대로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채무자 丙은 이러한 대위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丙이 위 대위소송에서 원고측에 참가하고자 한다. 어떠한 형태의 소송참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제1심에서 원고 甲과 乙은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甲 단독으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항소하지 않은 원고 乙은 항소심절차로 이심되는지 여부와 아울러 만일 이심된다면 원고 乙은 항소심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3) 피고 丁은 변론에서 "X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戊인데, 그에게 그 대리권을 준 바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 甲과 乙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戊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여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심리한 후 丁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이를 인용하면서 戊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丁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과 동일한 심증을 갖는다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2 】 (20점)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해주면서 1년 후에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나 乙로부터 차용증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乙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않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까지 다투고 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A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A변호사는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다. A변호사는 변론 진행과정에서 乙이 오래 전에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기를 유예해 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甲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증거방법으로 제출하였다. 동 확인서에는 乙의 것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乙은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도장에서 현출된 것이 아니라는 위조 주장과 함께 설사 그러한 인영을 가진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 하더라도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乙의 각 주장에 기초해서 확인서의 진정성립 인정을 위하여 甲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0점)

(2) A변호사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상속인이 있다. 그런데 甲의 사망사실을 모르는 A변호사는 甲을 원고, 乙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다. 이 소는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3 】 (30점)

乙은 X건물의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동 건물을 임차한 후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乙은 X건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동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하여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제1회 변론기일에 재판장은 乙에게 "이 사건 X건물이 甲의 소유임은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乙은 "그렇다"라고 답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변론기일에서 乙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해서 X건물이 甲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하고자 한다. 이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이 사건에 대하여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던 중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나 甲과 乙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그 후 재판장은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에 甲은 출석하지 않았고 乙만 출석하였으나 乙은 변론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2회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제1회 및 제2회 변론기일에 甲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반면에 乙은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았다. 이 때 재판장은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제3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혹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4 】 (20점)

甲은 乙에게 건설현장용 발전기를 매도하였는데 그 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乙을 상대로 1억원의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변론에서 위 발전기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위 발전기의 하자로 인한 6,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甲의 소구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한다고 진술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제1심 법원은 심리결과 乙의 변제항변은 이유가 없으나, 상계항변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乙은 甲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부불복하여 항소한다면 그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하시오. (10점)

(2) 乙의 위 상계주장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대여한 별개의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으로 乙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인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하시오. (10점)